



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 결과요지

2020. 5. 22.

운영지원단

◆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 개요 ◆

1. 일시 : 2020. 5. 14.(목) 14:00~19:20

2. 장소 : 대법원 409호 회의실

3. 참석자

- 대법원장(의장)
- 김순석, 김진석, 박균성, 윤준, 이광만, 이미경, 이찬희, 최한돈(이상 위원, 가나다 순)
- 이창열(간사), 고원혁(서기)

4. 배석자

- 김성수(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), 김정환(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)
- 최수환, 홍동기(이상 운영지원단장), 박노수, 김도현, 이인수, 양석용, 공건개(이상 운영지원단원)

5. 의사개요

가. 2019회계년도 결산보고(소관: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)

- 김성수 위원장, 2019년 결산 결과를 간략히 보고함

나.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(소관: 재정·시



설 분과위원회)

1) 김성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

- 김성수 위원장,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이에 대한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

2) 토론

- 위원들은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,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
 - 형사 전자소송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법원, 검찰, 경찰 상호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

3) 결정사항

- 재정·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

다.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(소관: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)

1) 김성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

- 김성수 위원장, 2020. 7. 1.자 인사 이후 적용될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 및 이에 대한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

2) 토론

- 위원들은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,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
 - 재판부 인력 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재판부 증·신설, 폐부 등 외에 소송 건수, 사건의 난이도 등도 고려했으면 좋겠음
 - 재판연구원, 재판연구원 등 재판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향후



정원조정이 될 필요가 있음

- 표준업무량을 조사함에 있어 실제 업무 수행자가 느끼는 어려움 등 주관적 요소도 고려했으면 좋겠음
- 발제자 답변: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표준업무량 조사 시 담당자가 느끼는 주관적 어려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음

3) 결정사항

- 현행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은 객관적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적정함
- 향후 법원별·직무별 특수성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·노력이 필요함

라.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 방안(소관: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)

1) 박천규 조직심의관 기초발제

-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에 관하여, ①전용차량 배정 변경 대상, ②변경된 배정기준 변경시기, ③전용차량 폐지 시 보완책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

2) 토론

-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
 - 고등부장과 지법부장으로 나누어 전용차량 배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.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, 가정법원장의 대외적 활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장에 대해서도 전용차량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
 - 가정법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정법원장에게는 굳이 전용차량을 배



정할 필요 없이 업무용 차량으로 충분함

- 기관장의 경우 전용차량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, 가정법원장에 대해서도 전용차량을 배정하되, 유휴 시간에는 당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함
- 내부적인 문제의식이 아닌 외부의 요구에 의해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일괄 감축하지 않는 경우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임. 다만, 일괄 감축하더라도 보완책은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일괄 감축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리스 계약금보다 유지 시 필요비용이 더 큰 점, 단계적 감축 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 감축이 타당함
- 전용차량 폐지 시 관리직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하므로, 관리직의 업무영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검토반에 관리직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
- 전용차량 폐지문제와 상관없이 16호봉 이상의 법관에게 명예퇴직수당과 직무성과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속히 고칠 필요가 있음. 이는 고등부장에 탈락한 자는 고등부장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일호봉제의 취지와 맞지 않음
- 법관의 업무와 직무성과금은 성격이 맞지 않음. 이번 기회에 직무성과금은 폐지하고, 재판수당 등 법관의 직위·직무와 걸맞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3) 결정사항

-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



적용·시행함이 바람직함

-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마.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(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제안 안건)

1) 기초발제

-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, 판결서 공개 관련 기존의 법원행정처 검토 내용 및 정책방향을 개괄적으로 보고함

2) 토론

-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
 - 판결서 공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의 여지가 많고, 소송당사자의 인격 보호, 열람공개 제한, 신청권 등 절차보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음
 - 재판공개 원칙에 맞는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. 또한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
 -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음. 또한 재판부 참여관에게 비실명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법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담보되고 참여관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음
 - 입법 전이라도 2013. 1. 1., 2015. 1. 1. 이전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했으면 좋겠음. 법원공무원의 면책 문제는 현 소송법상 면책규정을 유추적용하면 될 것임



-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판결서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. 개인정보 때문에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가 늦춰지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,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
- 대법원 관례만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. 최소한 대법원 판결만이라도 1·2심과 연계하는 작업을 시행하면 판결문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음
- 개인정보보호만 중시하기보다는 판결문이 최대한 공개되어 일상생활에서 법리와 저촉되는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법인은 반드시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함
- 사생활 침해 부분은 관계인들에게 공개 제한 신청 등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두면 되므로,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함
-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찬성함.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불필요한 묘사가 많이 포함되고 있으므로, 차제에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

3) 결정사항

- 관련 법률 개정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, 공개 시기, 공개 방법,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·검토를 위하여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, 위 안건에 대한 1차 보고는 2020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함

바.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(소관: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)

1) 김정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보고



- 김정환 간사, 사무관승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

2) 토론

-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
 - 장기적으로는 시험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. 다만 기존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의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시험을 병행하되, 시험을 폐지할 시점 및 평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지를 표명해야 함
 - 시험제도는 폐지로 가는 것이 맞지만, 지금 당장 시험을 폐지하기는 어려워므로 특별승진을 병행하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함
 - 비시험 승진제도의 공정성,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. 법원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치는 등 특별승진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, 특히 법원장, 국과장 등 인사평정권자는 2차 선발에만 관여하는 것이 타당함
 - 근무평정 관련, 현재의 국과장 중심의 평정에서 직원 상호간 평정을 도입하고, 재판부 참여관 및 실무관에 대한 재판부의 근무평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
 - 시험과목을 변경하여, 법원에서 성실히 일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능력과 시험 성적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3) 결정사항

- 앞으로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과도기적으로,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



병행하여 시행하되, 2022년 1월에 10%, 2023년 1월에 20%, 2024년 1월에 30%의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함

- 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,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,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하기로 함(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,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,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)
- 사무관시험승진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

사.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(소관: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)

1) 김정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보고

- 김정환 간사,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

2) 토론

-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
 - 전문직위 부여 목적이 전문성 향상인지 아니면 보직기간 장기화인지 명확치 않음. 한 직위에서 전문직위를 부여받은 후 3년을 근무하고 다른 직위로 전직하는 경우 현재와 차이가 없어 보임
 -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위를 도입하는 주장에 일단은 찬성하지만, 한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 부정부패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



- 한 직위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
- 현재 사법행정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직위를 도입한다면 사법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
- 실질적으로는 보직기간 장기화를 위한 것인데 ‘전문직위’라는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혼동을 주고 있음
- 전문직위제를 도입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수당 증액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

3) 결정사항

-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함(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)

아. 다음 회의: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(정기회의)

- 일시: 2020. 6. 11.(목) 14:00
- 장소: 대법원

자.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

- 자문회의는 제6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‘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 방안’, ‘판결서 공개제도 개선’, ‘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’ 논의 중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<끝>